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940901	바둑기사	71.9	60.7	21.1
940902	꽃꽂이 및 요리교사	75.4	65.6	24.8
940903	재단사 및 학원강사	61.7	46.4	27.7
940904	직업운동가	65.8	52.1	30.5
940905	유흥接客원 및 댄서	61.7	46.4	29.5
940906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77.6	68.6	38.9
940907	음료품배달원	80.0	72.0	34.9
940908	서적및화장품외판원	75.0	65.0	35.1
940909	기타자영업	64.1	49.7	28.0
940910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67.8	54.9	24.6
940911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67.3	54.2	31.2
940912	개인간병인	76.8	67.5	15.8
940913	대리운전기사	73.7	63.2	28.1
940914	골프장캐디	62.2	47.1	28.1
940915	목욕관리사	67.6	54.6	29.6
940916	행사도우미	65.8	52.1	29.5
940917	심부름용역원	65.8	52.1	29.5
940918	퀵서비스배달원	78.8	70.3	28.1
940919	기타물품운반원	68.0	55.2	29.6
950000	기타가사서비스	84.3		20.1
950001	가사보조원	73.7		23.8
950002	놀이방	80.7		20.1

제4조(단순경비율 기본율 및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 3. 30.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7-4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거창 용암정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거창 용암정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88호 「거창 용암정 일원」

○ 소재지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63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명승 제88호 「거창 용암정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거창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p><1구역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p><2구역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 <p><1구역~2구역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시설물, 구조물 등 포함) 건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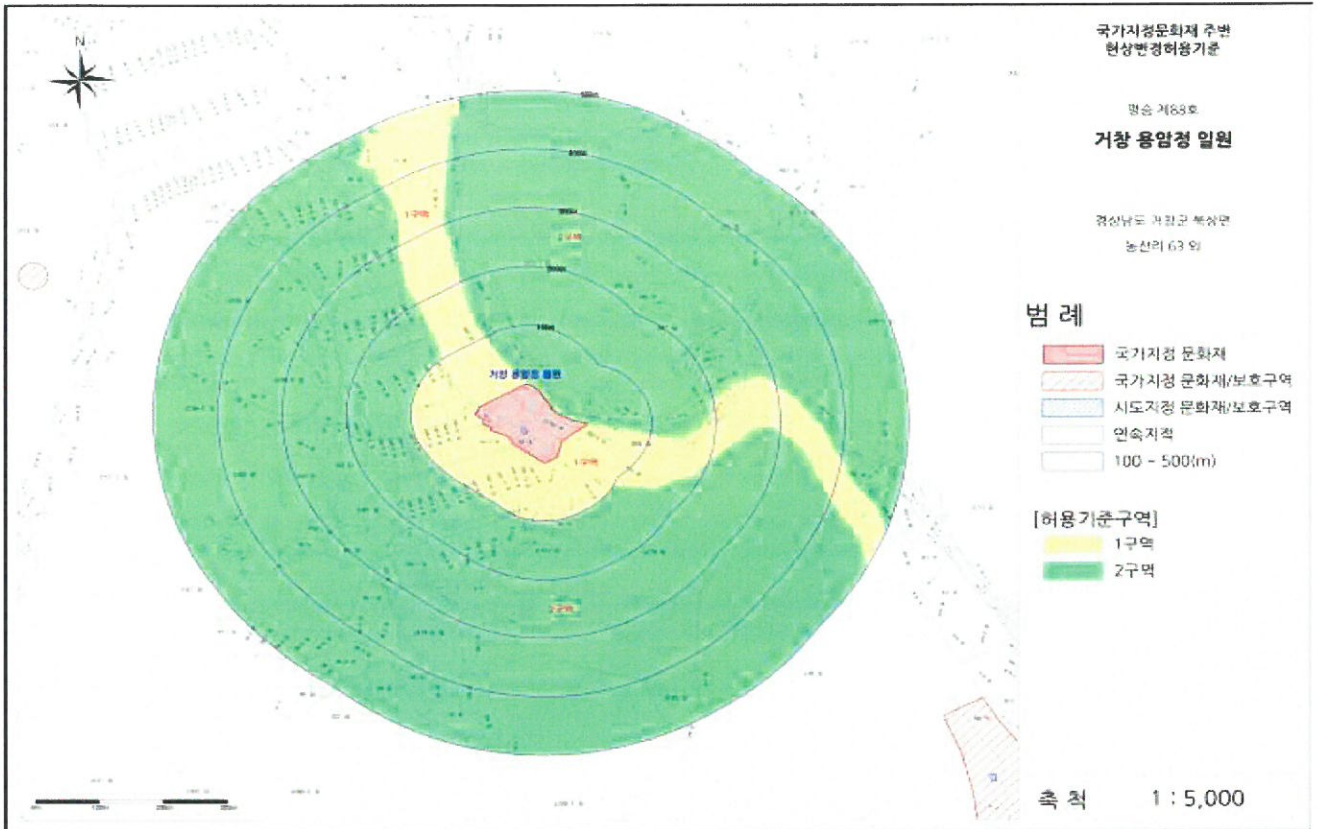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 전화 : (055) 940-3432 / 팩스 : (055) 940-3409
- 주소 :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지형도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송프린세스헤스 티아안덴시오	2016.03.01	여	필 리 편	대구광역시수성구경안로 45길172-6 (매호동)	2017.03.09	송준호	안덴시오리 첼아수판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송킹이지 안덴시오	2014.11.15	남	필 리 편	대구광역시수성구경안로 45길172-6 (매호동)	2017.03.09	송준호	안덴시오리 첼아수판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민정	2016.10.31	여	베트남	경기도부천시삼작로256번길53-16 (도당동, 베스트빌)	2017.03.07	